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稅에 따른 市稅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查 經 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疑 與 答辯 要旨 4
5. 討 論 要 旨 4
6. 審 查 結 果 4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 市稅不均一
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檢印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라 土地와 建築物의 課稅와 關聯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支援하기 위하여
- 取得稅와 登錄稅의 課稅에 있어 檢印契約書上의 契約金額에 地方稅法 第 112條 및 地方稅法 第 131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稅額의 100分之 40을 輕減하고, 輕減하여 算出된 稅額이 課稅時價 標準額에 의한 算出稅額에 미달된 경우에는 課稅時價 標準額에 의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하고 있으나

- 市稅 不均一課稅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其間 不均一 課稅 하고져 함.

나.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져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 에는 適用時限을 1994年 12월 31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져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 本 改正條例案은 土地 및 建築物의 課稅와 關聯하여 取得稅와 登錄稅의 稅率 및 課稅 標準適用에 있어 地方稅法 第 112條와 第 130條의 規定에 依據 事實上 取得 價額으로 適用하여야 하나 國民生活의 租稅秩序를 確立 誘導하는 次元에서 檢印契約書上의 契約金額에 의한 算出稅額의 100分の 40을 輕減하는 條例가 '91年末로 時限滿了됨에 따라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거 1991.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 改正內容은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 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以上은 不動產登記法 第 40條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檢印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른 土地와 建築物의 課稅와 關聯하여 國民들의 遵法精神 提高를 위해 現行 條例 附則 2號의 適用時限을 延長하여 一定期間 不均一 課稅 코져 하는 것으로 既往의 條例의 趣旨에 비추어 妥當한 措置라 思料됨.

4. 質疑 吳 答辯要旨：省 略

5. 討 論 要 旨：省 略

6. 審 查 結 果：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檢印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른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65
----------	----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檢印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라 土地와 建築物의 課稅와 關聯하여 國民 生活의 安定을 支援하기 위하여
- 나. 取得稅와 登錄稅의 課稅에 있어 檢印契約書上의 契約金額에 地方稅 法 第 112條 및 地方稅法 第 131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稅額의 100分의 40을 輕減하고, 輕減하여 算出된 稅額이 課稅時 價 標準額에 의한 算出稅額에 미달된 경우에는 課稅時價 標準額에 의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하고 있으나
- 다. 市稅 不均一課稅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延長하 여 一定期間 不均一 課稅하고자 함.

2. 主要骨子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월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參考事項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7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第 112條 (稅率) 取得稅의 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또는 年賦金額의 1,000分之 20으로 한다.
 - 第 131條 (不動產登記의 稅率) ① 不動產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 (1) 農地 : 不動產價額의 1,000分之 3
 - (2) 其他 : 不動產價額의 1,000分之 8
 - 2. 第 1號 以外의 無償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不動產價額의 1,000分之 15. 다만, 政府에 登錄된 宗教團體와 民法 第 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이 所有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의 1,000分之 8로 한다.
 - 3. 第 1號 및 第 2號 以外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 (1) 農地 : 不動產價額의 1,000分之 10
 - (2) 其他 : 不動產價額의 1,000分之 30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 칙 (조례 제 1708호) ② (<u>시행기간</u>)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1년 12월 31일까지</u> 시행한다.</p>	<p>부 칙 (조례 제1708호) ② (<u>적용시한</u>) ----- ----- <u>1994년 12월 31일까지</u> ----- -----</p>